

대한민국의 국가장에 대한 질의 답변

1. 한국 국장·국민장 법령 주관 기관 및 집행 기관은 각각 어떤 기관입니까? 국장과 국민장의 대상(신분조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각 기관은 어떻게 분업합니까?

⇒ 국장과 국민장은 종전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개정(2011.5.30.)됨에 따라 국가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개정하여 통합된 이유는 국장과 국민장의 장례형식 및 대상의 구분 조건이 모호하여 구분에 의미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국가장으로 일원화하게 되었습니다.

1) 국가장의 법령주관 및 집행기관 : 안전행정부

2) 국가장의 대상

- 전·현직 대통령

- 대통령 당선인

-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 종래의 국장과 국민장에서 대상자의 차이는 별도 규정이 없었음

3) 각 기관의 분업 : 안전행정부를 장례주관 부처로 하여, 기획재정부(예산), 외교부(외교사절 안내), 국방부(군행사요원 지원), 보건복지부(의료 및 구급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보도 및 홍보, 영결식 중계), 국가보훈처(국립묘지 안장 여부 판단), 지방자치단체(분향소 지원 등)으로 분업

2. 국장 의식(안치, 장례의식 및 행진 방식 등)은 어찌합니까? 박정희 대통령 국장은 어떤 방식으로 거행되었습니까? 지금까지 국민장 거행 대상자가 13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준 절차와 의식이 국장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1) 안치는 유족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족이 희망하는 장소를 빈소로 결정하여 안치합니다. 장례의식은 국가장 결정 ⇒ 정부실무준비단 구성 ⇒ 장례위원회 구성 및 공고 ⇒ 장례집행계획 수립 ⇒ 영결식 ⇒ 안장식의 순으로 진행됩니다.(故 김대중 前대통령 장례 시 행진 요도 별첨)

2) 故 박정희 前대통령 국장은 총 9일 간 장례가 진행되었으며, 빈소는 청와대, 분향소는 중앙청광장과 전국 각지, 영결식은 중앙청광장에서 거행

되었고, 안장식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되었습니다.

3) 국민장의 비준 절차와 국장과의 차이 : 비준 절차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합니다(국가장법 제2조)

〈종례 국장 · 국민장과 국가장의 비교〉

구 분	국장(國葬)	국민장(國民葬)	국가장(國家葬)
장례기간	9일 이내	7일 이내	5일 이내
장례비용	전액 국고부담	일부 국고보조	전액 국고부담*
조기개양	장례 기간 중 개양	당일만 개양	장례 기간 중 개양
공휴일지정	당일 관공서 휴무	없음	없음



* 다만, 국가장의 비용부담에서 조문객의 식사비용, 노제 및 삼우제 비용, 사십구일제비용,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의 토지구입 · 조성비용 등은 제외

3. 국장 대상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고 다른 토지를 선정, 안장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만일 가능하다면 국가에서 관리유지 경비를 보조하고 인력을 제공합니까?

⇒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묘지가 결정되므로, 본인 또는 유족이 희망할 경우 국립묘지 외의 지역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가의 관리 경비 및 인력 지원은 없습니다.

4. 국가유공자의 지원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훈 대상자의 심의, 확정 방식과 사적 보존 방식은 어떠합니까?

⇒ 국가보훈처의 소관 업무입니다.

〈별첨〉 故 김대중 前대통령 국장 장례 행렬

* 싸이카

선도차

(태극기)

영정

영구

상주 및 유족대표 등

유족·친족 및 수행차량 등

구급차

예비차(영구차, 버스)

후미차

* 싸이카

대한민국의 국가장에 대한 질의 답변(2차)

1. 「국가장법」의 조문, 시행령 및 기타 국장 상관 법령 등 국장, 국민장을 소개하는 글이나 책 등을 요청드립니다.
⇒ 국가장법 및 국가장법 시행령을 별첨하여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정부의전편람」 중 국장·국민장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다만, 본 자료는 국가장으로 통일되기 이전 자료입니다.
2. 김대중 전대통령 장례 자료 : 결정 절차, 장례일 수, 빈소 설치 장소, 안장 의식, 군례, 차량 수, 안장장소 등
⇒ 1) 결정 절차 : 유족 측 의견 수렴 → 관계국무위원 간담회 → 국무 회의 의결 → 대통령 결정
2) 장례일수 : 5일장
 빈소 : 국회의사당
 안장장소 : 국립서울현충원
3. 국장 및 국민장은 각각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분류 기준이 모호하여 2011년 국장,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합쳐졌다고 하셨는데, 당초 각각의 정의가 무엇이었는지? 김대중 전대통령의 장례 종류는?
⇒ 1)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은 196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최초의 국장은 박정희 前대통령 국장으로 1979에 있었고, 최초의 국민장은 1949년 김구 前임시정부수석의 국민장이었습니다.
2) 국장과 국민장의 구분된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하였을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거국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장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3) 김대중 前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이었습니다.
4. 국민장 대상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사람이 존재하는지? 혹시 다른 곳에 이미 안장된 다음 국민장 대상자로 추가된 사람이 있는지?

- ⇒ 1) 국립묘지 안장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국립묘지에 장례를 치렀으나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분도 다수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故 노무현 前대통령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지만, 사저 인근에 장지가 마련되었습니다.
- 2) 다른 곳에 안장된 다음 국립묘지에 추가된 경우는 없습니다. 국립묘지에 장례를 치렀으나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분은 국립묘지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5. 국장·국민장의 안건 수, 성별, 신분 유형, 업적 등 자료, 대통령 신분이 아닌데 국장·국민장을 진행한 경우, 대통령이 사망했으나 국장이나 국민장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와 그렇다면 그 결정 과정은?

- ⇒ 1) 국장 및 국민장 사례

□ 국장(2회)

년월	성명	경력	장의기간	장지
'79.10	박정희	대통령	9일	서울현충원
'09.8	김대중	前대통령	6일	서울현충원

□ 국민장(13회)

년월	성명	경력	장의기간	장지
'49.7	김구	前임정주석	10일	효창동
'53.4	이시영	前부통령		수유동
'55.2	김성수	前부통령	7일	고대 후정
'56.5	신익희	前국회의장	19일	우이동
'60.2	조병옥	민주당 당수	5일	수유동
'64.10	함태영	前부통령	7일	의정부
'66.6	장면	前부통령	9일	포천
'69.8	장택상	前국무총리	7일	국립묘지
'72.5	이범석	前국무총리	7일	국립묘지
'74.8	육영수	대통령 영부인	5일	국립묘지
'83.10	서석준외16	부총리 등 (순국외교사절)	5일	국립묘지
'06.10	최규하	前대통령	5일	대전현충원
'09. 5	노무현	前대통령	7일	사저인근 (봉하마을)

2) 현직대통령의 사망 사례는 박정희 전대통령이 유일하며,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전직대통령 중에는 이승만 전대통령과 윤보선 전대통령의 경우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유족 측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6. 국립묘지와 국가장의 관계

⇒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은 별개의 법률에 따라 이뤄집니다. 국가장 여부와 상관없이,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보훈처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7. 국민장 대상자(13명)의 결정 순서, 의식 및 순서에 차이가 있습니까? 종교 혹은 가족의 의견이 장례의식에 반영이 됩니까?

⇒ 특별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족의 의견에 따라 종교의식 등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국가장 시, 행사 순서나 의식 등은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 정부 공식 행사의 품격에 맞게 결정되어 진행됩니다.

8. 한국의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장례 절차 관련 계획을 세우는지?

⇒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9. 국장·국민장 대상자의 사적보호를 위해 기념관 혹은 도서관을 따로 만드는지?

⇒ 관련 규정이나 선례 등이 없습니다.

10. 국가장 의식에 사후 모습을 참배하는 순서가 있는지? 사자의 특별한 업적에 따라 특별한 의식을 마련하는지?

⇒ 사후 모습 참배 순서는 없습니다. 특별한 업적에 따른 의식은 별도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11. 국가장 장례기간 5일이 이전의 9일, 7일에 비교하여 어떤 순서가 줄어들었는지?

한국 국민의 평균 장례기간과 비슷한지?

⇒ 장례기간에 따라 줄어든 순서는 없습니다. 5일 이면 국가장의 모든

절차 이행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장례기간을 5일로 하였습니다. 한국 국민의 평균적인 장례기간은 개인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통상 3일에서 5일입니다.

12. 한국의 국가장례의식이나 순서가 기타 국가와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지?
⇒ 정부의 공식 행사로 치러지는 장례로서 특별한 다른 점은 없습니다.